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59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김현정·박홍배·이기헌

부승찬 • 전재수 • 손명수

이개호 · 정태호 · 김기표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

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제1호나목 삭제 등).

법률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을 "제1호가목 또는 라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
록) ① ~ ③ (생 략)	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4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	
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	
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1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u><삭 제></u>
지 아니한 사람	
다. ~ 사. (생 략)	다. ~ 사. (현행과 같음)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	2
중개업자의 경우	
가. 제1호가목・나목 및 라목	가. <u>제1호가목 또는 라목</u>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 다. (생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